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 정지 기간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해제사유발생일	년 월 일		
신청 사유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 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 "신청사유"란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합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